

7. 都市交通整備促進法施行令및施行規則中改正令(案)立法豫告

交通部公告 第1994-37號 1994. 7. 2

1. 개정취지

행정쇄신 및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제도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령(안)

- 가. 상주인구 30만미만인 중심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교통권역중 시계외 읍·면지역에 소재하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의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.
- 나. 건축물중 교통유발처리시설인 부설주차장 및 교통유발과 관련없는 부대시설(기계·전기설비실)의 면적은 교통영향평가대상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.
- 다. 기존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할 경우 증가되는 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의 20%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해당되어 대형건물은 기존면적에 비하여 조금만 증가되어도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증가되는 면적이 기존건축물 총연면적의 15%미만인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.
- 라. 공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이미 평가를 받은 부지내의 개별공장시설과 도시교통정비지역중 시계외 읍·면지역에서의 개별공장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.

- 마.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 (㎡당 350원)을 시장이 50/100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.
- 바. 기업체등이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통근버스 운영·승용차의 부제운행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시장이 당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을 50/100까지 경감하여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함.
- 사. 교통유발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대형음식점을 기타용도에서 별도용도로 분류하여 그 교통유발계수를 서울도심지역 기준 1.0에서 1.49로 상향 조정함.
- 아.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.

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(안)

- 가. 교통영향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그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함.

3. 의견제출

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4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통부장관(문의처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교통부 육상교통국 교통영향평가과(504-9073))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단체의견은 단체명과 대표자명)

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